

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
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손 자 용

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1년 3월 2일 김동환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3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우리지역의 문화유적을 정확히 안내 설명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문해설 인력 양성과 운영을 통한 관광 충북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,
- 도내 관광현장에서 문화·관광 발전을 위한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적극적으로 활용 및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범위(안 제2조~3조)
-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(안 제4조)
-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육 및 평가(안 제5조)
- 문화관광해설사의 현장수습근무 및 표식(안 제6조 ~ 제7조)
-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비 등 지급(안 제8조)

- 문화관광해설사의 사무의 위탁근거(안 제9조)
-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체 협의회 구성 및 지원(안 제10조)

4. 검토의견

금번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충청북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우리지역의 문화유적을 정확히 안내 설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문해설인력 양성과 운영을 통해 충북관광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, 문화관광해설사의 적극적 활용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

주요내용으로는

-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조례의 용어정의와 적용범위를 지정하였으며,
- 안 제4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를 규정하고,
-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육 및 평가, 현장수습 과정 운영, 표식 등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8조에서는 활동비 지급, 안 제9조에서는 사무위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10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협의회 구성과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.

동 조례안은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인력양성과 교육 등 지역 관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다만, 문화관광해설사 조항이 포함된 관광진흥법이 위원회 대안으로 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태로, 개정안이 의결되어 공포된 후 6개월 이내에 시행령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바, 시행령 제정내용에 따라 금번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될 것임.

또한 안 제10조제1항의 도협의회 구성에 있어서는 민간협의회 구성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같은 조 제2항의 운영비 지원은 타 민간협의회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보다 세밀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붙임 :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부. 끝.